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양도 이전가격의 뉴스 업데이트

연결거래의 양도가격, 가격이전저항 및 국고미달 방지들의 관리에 대한 안내 의령의 초본

재정부는 법인소득세관리, 특히 연결거래가 있는각 회사사이의 가격이전문제관리업무를 강화하는 노력중에 2010/04/22일에 통지No.66/2010-TT-BTC(통지66)니 발급을 계속해서연결거래의 양도가격, 가격이전저항 및 국고미달 방지들의 관리문제에 관련된 새 규정의 의령초본을 금방 제출한다. ("가격이전 의령 초본")

초본은 각 연결거래범위에 대한 더 구체적,명백적으로 규정했고 연결거래분석의 요구, 순서와 이전가격관리 중에 각 세부기관들의 권한,의무를 구체화했다.

2016年12月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주)의 이번 뉴수종엔 고객님의 참고로 가격이전 의령의 대표적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해들인다. 다음 :

1. 국제성을 가진 각 변경.
2. 연결거래 관계를 확정할때 일부규정의 조정과변경범위를 넓여준다 .
3. “본질이 형식을 결정한다”의 원칙.
4. 차입금이자와 서비스비용에 대한 공제원칙
5. 비교분석진행시에 우대순서.
6. 연결거래신고 절차의 수속 간소화.
7. 신고업무와준수된서류준비에 대한 일부 새로운 규정.
8. 세무서의 세지정에 당할때 기업에게 장점을 만들어준시정가격확정에 대한 각규정 준수.
9. Grant Thornton Việt Nam(주)의 권고.



1.국제성을 가진 각 변경

의령초본에 내준 일부변경의 제출내용은 시장가 확정에 대한 국제적 각 기준과 더 적합하기위한 베트남에 시장가격 확정활동중에 법적기준들에 도와준다, 즉 OECD의 가격이전에 대한 안내와 기초의 마모 방지와 이익전송 (“BEPS”)에대한 각 제출.

구체적으로, 의령초본은 크롭규모의 활동과 재정에 대한 각 정보 신고에 일부 규정변경을 제출해서 각 국토중단 이익보고 (“country-by-country report”)를 적용하고 크롭중 거래가 계산방법에 대한 선 합의 (“APA”) 적용이 만약있는 신고요구들을 적용한데 조건을 마련해준 목적이다.

2.연결거래 관계를 확정할때 일부규정의 조정과 변경범위를 넓여준다

초본은 새발급의영의 조정범위에 속한 각 연결거래를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조정범위를 넓인다.

그에 따르면 조정범위내의 서비스는 크롭내부서비스와 재정서비스를 포함하고 동시적 진행시에 유/무형 자산과 원동력을 공통사용에 대한 각 거래들을 더 보충한다.

초본도 연결관계확정 업무중에 정량적인 일부 변경들을 제출한다. 다음:

소유주 관계에 관련된 경우, 연결에 대한 관계가 직접/간접 투자금소유에 20%부터 25%로 증가된다;

관리운영관계에 관련된 경우, 운영반 중에 각 성원들의 수량에 대한 연결관계중에 조건이 50%부터 30%로 감소한다; 그리고,

경제면에 관련된 컨트롤인 경우, Input원료와 Output상품에 대한 컨트롤기준에 관련된 거래관계에의 조건이50%부터 60%까지 올린다.

3.“본질이 형식을 결정한다”의 원칙

“본질이 형식을 결정한다”의 원칙은 통지66의 한행규정에 비해 이번 초본의 새로운 돌출적 규정의 하나이다. 내준 원칙은 실제경제본질과 맞은 표현의 연결거래를 보장해주어서 거래 계약중에 고의적 정리된 각 내용과 조항들을 예측하지않은 목적이다. 연결관계가 있는 각 거래중에 실제영업은 강조되고 기업에 이전가격 검사,사찰이 있경우에 우대적으로 적용한다.

4.차입금이자와 서비스비용에 대한 공제원칙

“본질이 형식을 결정한다”의 원칙의제출외에 초본도 차입금이자와 서비스비용에 대한 공제원칙을 재출해서, 그중에 상기 비교항목에 대한 각 조건과 법적요구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이런 새규정의 적용은 기업에게 각 적합서류,증빙들의 준비중에 더 주동적으로 도와주아서 상기 비용의 합례성을 보장 해주고 연결측의 서비스분배근거가 합리이라고 증명해준 것으로 매년 법인소득세의 결재 목적을 보장해준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가격이전 의령중에 차입이자 공제에 대한 보충규정이 법규문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다고 알아본다.



5. 비교분석 진행시에 우대순서

66통지내엔 오직 시장가의 확정방법의 정의공급과 적용안내를 하지만 가격이전 의령은 그런 방법들의 적용 순서를 내주었다. 그에 따르면 의령은 연결거래 분석중 각 내부정보의 우대적사용과 납세자가 상응정보와 비교방법의 적용이 않된면는 이유를 꼭 설명해야한 제출을 한다.

외부의 정보를 사용한 경우엔 가격이전 초본의령도우선 국내정보를 우대적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역중에 있는 정보를 사용한것을 지적하며 동시에 납세자의 적용에 적합을 만들어줌으로서 연결거래가 분석중에 승인될수있는 기초정보종류에 대한 규정을 내준다.

6. 연결거래신고 절차의 수속 간소화

본 의령중 새로운 주의점은 연결거래의 신고과정에 간소화에 대한 규정이고, 주로 중소기업에 또한 이전 가격 문제중에 적은 리스크가 있는 각 거래에 집중한다. 구체로, 각 기업은 연결거래가의 확정 서류 준비책임의 면제도하고 오직 연결거래 양식만 신고한다. 다음경우에 적용:

베트남에 발생된 거래와 그 각측들의 같은 법인소득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500억동 초과되지 않는 세금계산기에 발생된 총소득과 세금계산기에 발생된 연결거래 총금액이 300억동 불과하면 않된다.

7. 신고업무와 준수된 서류준비에 대한 일부 새로운 규정

이런의령은 새롭고 더엄격된 일부 규정을 내서워, 연결거래과정중에 각 기업이 준수해 야할것을 요구한다. 다음같다:

신규정과 삽입된 신고 양식 No. 01/NĐ-GCN은 연결거래에 대한 통지No.156/2013/TT-BTC와 삽입된 신고양식 No. 03-7/TNDN를 대신해준다;

연결거래확정 서류는 **매년 법인소득세결재시점 전에** 준비돼야 하고 세무서의 요구를 받을 때부터 근무의15일중 (66통지의규정처럼 30일을 대신함)에 세무기관에게 제출해준다;

국토종단적 이익보고의 공급;

66번 통지에 비해, 이런 초본은 납세자가 의무적 신고해 야한 정보/증빙서류에 대한 구체적, 더 상세한 규저을 한다. 특히 기업은 각 회사/그룹에 관련된 각 정보제공을 해야하고 예, 재정 결과,무형자산정보, 주요 서비스와 그룹사의 내부 재정활동의 정보들이다. 그런 조치는 그룹 내부의 각 활동지표, 기능 과 구체적 이익목표를 잡아낸 데 세무기관에게 편리적으로 마련해주 지만 납세자의 증빙서류의 증명,공급에 대한 부담을 만들낸다.



8.세무서의 세지정에 당할때 기업에게 장점을 만들어준시정가격확정에 대한 각규정 준수

이전가격의령은 세금지정의적용에 대한
2가지경우를 내준다, 다음같다:

납세자가 연결거래신고, 도한 회계 제도, 증빙을
충분 진행하는 경우엔 지정 혹은 비교조정 작업은
각 비교분석 원칙과 매 경우 혹은 업종에 근거한
연결거래가 확정방법에 근거한다. 그런 내용은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취문혹은 사찰에 당하면
기업의 준비된 연결거래가 확정 서류에 근거해서
세금계산사용의 단가기준에 관한 교환과 상담에
대한 많은 기회를 더 가진다.

다른 경우중(준수하지 않다), 세금지정조치는
세무기관의 정보에 근거하게 된다, 그런 경우 중엔,
납세자가 스스로 보호조치를 할수없고 세금조정을
위한 세무서가 내준 비밀적 동등 각 회사들의
정보와 Data에 필수적으로 근거하고 그런 일이
납세자측한테 아주 큰 불리 이다.

9. Grant Thornton Việt Nam(주)의 권고

우리는 각 전번에 문서를 내준 정보에 의하면,
이전가격 사찰실-부서가 국세청, Hà Nội, Hồ Chí
Minh City, Bình Dương 과Đồng Nai성의 세국에
설입했다. 각 세무서는 이전가격 저항을 위한 각
사찰활동을 강화하고 동시에 현재같은
연결거래이전 가격관리에 대한 법리적 기초를
완벽하는 배경하에, 출생된 이전가의령은 각
관리기관들이 관리,사찰 진행에 엄숙적,
집중적으로 하는 신호를 보여주며, 특히 FDI회사
인경우이고 새금사취저항과 구고손실방지의
목표에 지향한다.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세무기관은 법적 기초를
완료하는 한편에 각 영업거래 시장가격의
확정작업에 적용된 정보 기초들을 완료한 노력도
하고 있다. 우리의 예측으로 향후 근 시간내에,
가격 이전 문제에 대한 전문적 검사/사찰의 각
활동을 더 엄격적으로, 동시에 거래수량뿐 아니라
납세자분만 이고 크롭규모까지 영업 규모 와
깊이를 더 복잡하게 진행한다.

때문에, Grant Thornton Vietnam (주)는
고객님에게 각 열결측과 거래관계의 발생이 있으면
다음 권고를 하고싶다:

기업 사장단과 운영반은 연결거래의

시장가격본질을 확정하는 규정작업에 도와주기
위한 각 필요 서류, 증빙들을 주동적으로 충분
준비해주고, 시장가격확정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서
그를 통해 취문에 당한 리스크의 감소와
세무기관과 분쟁토론시에 더 주동적 처리를 한다 ,
서류준비작업은 현행 세금 계산년도에만
진행된것이 아니고 2006년후부터 연결거래가
있으면 각 세금계산 년도 까지 서류를 준비해준다 .

기업도 최근 각년도내 연결거래 정보신고작업을
다시 검토한 필요가 있고 동시에 시장가 확정서류
Set를 준비해서 Data면과 시장가확정방법상에
정보의 정확, 충분,통일적 신고를 보장해준다.
주의로서 이전가격의 특별주제에 따라 하지않은 각
검사/사찰 진행 시에 거래가치의 조정과
지정작업을 진행할수 있다.

기업은 모회사 혹은 크롭사에게 국토중단이의
서류, 동시에 크롭규모의 재정정보에 대한
신고요구에 주의를 준 필요가 있다.

그 옆에, 조세및 시장가의 확정 분야에 유경험
전문적 전문가의 인사 분배작업도 이런 시점에
지정해준 필요가 있고 개별로 연결거래/ 이전가격,
총관적으로 매년 법인소득세의 결산에 대한
신고과정의 검토를 해서 이전가격의
검사/사찰단에게 공급해준 목적이다.

**고객님은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 (주)의
전문가들과 같이 연락해주시면 고객님의 각
연결거래의 이전가격서류에 대한 객관성, 가능성
및 시점에 맞은 자문을 받을가 있다.**



Contact

This newsletter is for reference purposes only. Grant Thornton Vietnam holds no responsibility for mistakes therein, as well as damages caused by the use of information from this newsletter without official advisory opinions from Grant Thornton Vietnam before practice.

Should you need to use information from this newsletter or support from Grant Thornton Vietnam, please contact our professional consultants.

Hanoi Office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D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For download, please visit our website:

www.grantthornton.com.vn

Hochi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8 3910 9100
F + 84 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Phạm Ngọc Long
Tax Director
D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Tomohiro Noriok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Trần Hồng Mỹ
Tax Director
D +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